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6-101호

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수리 고시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2번지 일원의 「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」에 대하여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신고 수리하고,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5일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가로주택정비사업

나. 명 칭: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82번지 일원

나. 면 적: 7,116m²

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가. 조합의 명칭: 동의대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장성인)

나. 사무소 소재지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87번길 11-5, 2층

5. 변경사항: 조합원 권리 변동

6.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수리일: 2026. 7. 10.